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97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, 종사자 처우 개선,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'서울시 사회서비스원'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이에 '서울시 사회서비스원'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'서울시 사회서비스원'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
 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포스트 타워 12층
 - 규모 : 613.59 m^2
 - 위치도



- 소속기관('19년) : 종합재가센터 5개소

연번	기관명	소재지	개소(예정)일
1	성동종합재가센터	성동구 아차산로33	7. 23
2	은평종합재가센터	은평구 진흥로77	8월 예정
3	강서종합재가센터	강서구 공항대로325	9월 예정
4	노원종합재가센터	노원구 한글비석로432	10월 예정
5	마포종합재가센터	마포구 마포대로11길	11월 예정

○ 관련법령

- 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
- 조례 :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사업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
-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
-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·개발
-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,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
-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다. 총 소요예산(안) : 36,010,619천원

라. 산출근거

- 인 건 비 : 22,789,939천원(본부 및 소속기관)
- 사 업 비 : 13,220,680천원(사무운영비, 교육훈련비, 연구개발비 등)

마. 출연의 필요성

-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, 서비스 직접 제공 및 관리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필요
- 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,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및 품질 관리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

-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,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도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정책팀 서영주 (☎ 2133-7747)